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5월 26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6월 8일

라. 상정일자: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-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증진,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을 구청장에서 민간 전문가로 변경하고, 대표이사에게 재단 대표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문화재단 사업 내용 중 변경사항 반영(안 제4조제1항제2호)
- 이사장을 구청장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(안 제7조제2항)
- 대표이사 임명권자를 이사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(안 제7조제3항)
- 당연직 이사 중 복지국장 삭제(안 제7조제5항제3호)
- 구의회의 선임직 이사 2인 추천 조항 정비(안 제7조제6항)
- 감사 임명권자를 이사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(안 제7조제7항)
- 이사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순서 정비(안 제8조제1항)

- 이사장이 아닌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도록 명기(안 제8조제2항)
- 감사의 권한 관련 내용 띄어쓰기 정정(안 제8조제3항)
- 재단 직원에 대한 임명권자를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(안 제10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경영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4조(재단의 사업)는 영등포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“대립, 문래 정보문화도서관 등 구립도서관” 운영에 관한 사항을 “위·수탁 도서관”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.
 - 안 제7조(임원)제2항은 문화재단 이사장을 이사회가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함. 안 제7조(임원)제3항은 대표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함. 또한, 안 제7조(임원)제7항에서 감사의 임명 시 공모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함. 안 제7조(임원)제5항은 당연직 이사에서 복지국장을 제외함. 안 제7조(임원)제6항은 선임직 이사의 임명 시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을 선임직 이사 모두 공모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함.
 - 안 제8조(임원의 직무)는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직무를 조정함. 안 제10조(조직 및 정원)는 재단 직원에 대한 임명권의 주체를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함.
- 검토 결과
 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선임직 이사와 감사를 공개모집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하게 하였으며, 문화도시 사업 추진 등 문화재단의 역할이 확대·다변화됨에 따라 문화재단의 이사장직을 구청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맡는 등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 조례안으로, 문화재단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7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6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영등포문화재단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증진,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을 구청장에서 민간 전문가로 변경하고, 대표이사에게 재단 대표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문화재단 사업 내용 중 변경사항 반영(안 제4조제1항제2호)
- 나. 이사장을 구청장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(안 제7조제2항)
- 다. 대표이사 임명권자를 이사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(안 제7조제3항)
- 라. 당연직 이사 중 복지국장 삭제(안 제7조제5항제3호)
- 마. 상위법 근거 없는 구의회의 이사 2인 추천 조항 정비(안 제7조제6항)
- 바. 감사 임명권자를 이사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(안 제7조제7항)
- 사. 이사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순서 정비(안 제8조제1항)
- 아. 이사장이 아닌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도록 명기(안

제8조제2항)

자. 감사의 권한 관련 내용 띄어쓰기 정정(안 제8조제3항)

차. 재단 직원에 대한 임명권자를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(안 제10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
3) 인권영향평가: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3. 5. 4.~5. 24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대림, 문래 정보문화도서관 등 구립 도서관”을 “위·수탁 도서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구청장으로 한다.”를 “이사회를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“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”을 “공모에 의해 구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재단을 대표하며”를 “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”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제7조제5항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”를 “대표이사, 제7조제5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사장을 보좌하여”를 “재단을 대표하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진술 할”을 “진술 할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이사장이”를 “대표이사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재단의 사업)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영등포구민회관 및 <u>대림, 문래 정보문화도서관 등 구립 도서관 운영 관리</u></p> <p>3. ~ 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임원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대표이사, 이사,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<u>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<u>복지국장</u></p> <p>⑥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<u>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구의</u></p>	<p>제4조(재단의 사업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위·수탁 도서관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이사회</u>의 추천을 받아 <u>구청장이 임명한다.</u>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구청장</u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⑥ -----</p> <p>----- <u>공모에 의</u></p> <p><u>해 구청장</u>-----</p>

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⑦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, 공모에 의해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⑧ (생략)
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서 정하는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
제10조(조직 및 정원) ① (생략)

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
-.

⑦ -----
----- 구청장-----.

⑧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-----
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
되 -----

-- 대표이사, 제7조제5항에서
정하는 당연직 이사
-----.

② ----- 재단을 대표하고 -
-----.

③ -----

진술할 -----.

제10조(조직 및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 대표이사가 -----